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1년도 제26차 회의

1. 일 자 2011년 11월 24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김 대 식 위 원

강 명 헌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최 도 성 위 원

5. 참 여 자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박 원 식 부총재보

김 준 일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이 중 식 금융결제국장 김 종 화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용 회 공보실장

성 상 경 의사관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50호 — 「공개시장조작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개정에 따라 공개시장에서의 증권대차와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 지원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먼저, 증권대차제도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음

일부 위원은 향후 증권대여를 활용해야 할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증권대여를 당행이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증권대여는 채권시장 경색과 같은 금융시장 불 안 발생시 당행이 금융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중 하나이므로 당연 히 당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증권대여 활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금융안정조치가 금융불안의 원인 및 정도,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절한 수단과 대응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 적이고 세밀한 기준을 사전에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당행이 증권을 차입하는 경우, 증권대여기관은 어떤 혜택을 가지게 되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민연금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들은 발행된지 오래되어 대여수요가 없는 단순 보유 국채를 당행에 대여함으로써 추가적인수익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해 동 위원은 증권차입제도가 당행에게는 RP매각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대여기관에게는 추가수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므로 앞으로 적극 활성화할 것을 당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증권대여 담보대상 증권의 범위를 금통위가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규정에 금통위가 담보증권을 별도로 정할 수 있 도록 명시함으로써 금통위 의결만으로 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당행이 담보로 받은 증권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담보증권중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은 신용위험이 없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신용증권은 당행이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신용위험을 관리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담보비율은 실제 증권대여시 금융시장 불안 정도 등을 보아가며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증권대차에 대해 별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증권차입의 경우에는 현재 RP거래에 대해 신축적인 운용을 위해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한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증권대여의 경우에는 금융시장 불안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지원의 성격을 띄게 되므로 필요시 금통위 의결을 통해 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유동성 조절수단 선택시 유동성 조절비용이 주요 고려사항인데, 단순히 실적에 근거한 과거 비용만 고려하지 말고 운용만기 금리수준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택함으로써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하였음

일부 위원은 이번 「한은법」개정으로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운용하는 데 있어 동 수단이 금융안정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사전 연구 없이 금융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 발생시 책임이 따르고 시장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동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음

이어서, 일중환매조건부 증권매매와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음

일부 위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목적과 동 제도 시행 시 금융투자회사들의 콜 또는 RP를 통한 차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은 증권결제의 조기화를 통해 연쇄적인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금번 일중RP제도는 일중 지원된 유동성이 해당 영업일 중에 상환되는 제도이므로 금융투자회사들의 콜 또는 RP를 통한 차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기존의 RP 대상기관과 별도로 일중RP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통화정책 수행 목적의 기존 RP거래와 달리 일 중RP거래는 결제 원활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이 목적이므로 서로 취지가 상이하며, 따라서 두 거래의 대상기관 선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후, 다만 선정 절차는 금융기관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절차를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u>의결사항</u>

「공개시장조작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공개시장조작규정」개정(안)(생략)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참조)